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종합관제센터장
(경유)

제목 관제업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 심의결과 알림

1. 관련근거
 - 가. 안전방재처-2747호(16.6.3.) 『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알림』
 - 나. 종합관제센터-2689호(16.6.21.) 『관제업무처리내규 일부개정(안) 사규심의 의뢰』
2. 관제업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은 사규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사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오니, 동 규정 제13조에 따라 확정 후 시행의뢰 바랍니다.
 - 가. 주요 개정내용
 - 15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결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이행
 - 7호선 전력, 신호 컴퓨터장치 공용설비에 대한 점검 주기표 추가
 - 16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 준수를 위한 개정
 - 기계관제 시설물 현황 증설
 -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시설물 추가
 - 나. 심의결과

사 규 명	심의결과	소관부서
관제업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	심의생략	종합관제센터

붙 임 : 관제업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(안) 1부. 끝.

기 획 조 정 실장 김성완

대리 도금수

처장 하성우

실장 06/27
김성완

협조자

시행 법무처-1839 (2016.06.27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037 전송 02-6311-4288 / dks0605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